제2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총무위원회(2026.3.23.)

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[전문위원 박 혜 진]

<의안번호 제2026 - 16호>

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6. 3. 6.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다. 회부일자 : 2026. 3. 6.

2. 제안사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**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**을 받기 위함.

3. 기금개요

가. 관련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○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○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○ 「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나. 운용방침

○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**세입·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 자금임**

○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
- 총괄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- 운용부서 : 각 기금관리운용 관·과·소

○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·운용

다. 기금조성현황(총무위원회 소관)

기 금 명	2025년도 말 조 성 액 ⓐ	2026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6년도 말 조 성 액 ⓓ=ⓐ+ⓑ-ⓒ	증 감 ⓔ=ⓓ-ⓐ
		수 입ⓑ	지 출ⓒ		
합 계	62,409,052	5,848,161	44,961,020	23,296,193	△39,094,644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54,315,125	1,256,089	39,810,959	15,760,255	△38,554,870
고향사랑 기 금	984,552	402,186	166,461	1,220,277	235,725
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-	4,030,000	4,030,000	-	-
식품진흥 기 금	134,971	49,350	49,000	135,321	350
중소기업 육성기금	3,814,518	22,750	800,000	3,037,268	△777,250
아림예술제 진흥기금	536,811	11,447	10,000	538,258	1,447
사회복지 기 금	2,623,075	76,339	94,600	2,604,814	△18,261

4.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1)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구 분	'25년도말 조성액 ⓐ	'26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6년도말 조성액 ⓔ=ⓓ+ⓐ
		수입ⓑ	지출ⓒ	증감 ⓓ=ⓑ-ⓒ	
계	54,315,125	1,256,089	39,810,959	△38,554,870	15,760,255
재정안정화계정	41,575,902	952,614	37,400,000	△36,447,386	5,128,516
통합계정	12,739,223	303,475	2,410,959	△2,107,484	10,631,739

2) 수입계획

○ 재정안정화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42,528,516**	**42,519,870**	**8,646**	
공공예금이자수입	952,614	952,614	0	
예치금 회수	41,575,902	41,567,256	8,646	
기타회계전입금	0	0	0	

○ 통합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13,042,698**	**13,041,998**	**700**	
공공예금이자수입	303,475	303,475	0	
예치금 회수	12,739,223	12,738,523	700	
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	-	-	-	

3) 지출계획

○ 재정안정화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지출액	당초지출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42,528,516**	**53,519,870**	**8,646**	
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	5,128,516	12,519,870	△7,391,354	
일반회계 전출금	37,400,000	41,000,000	7,400,000	

○ 통합계정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지출액	당초지출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13,042,698**	**13,041,998**	**700**	
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예치금	10,508,892	10,508,192	700	
수질개선특별회계 예치금	91,100	91,100	0	
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	**31,747**	**31,747**	**0**	
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	1,000,000	1,000,000	0	
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	1,410,959	1,410,959	0	

나. 고향사랑기금

1) 연도말 기금조성액

[단위 : 천원]

구 분	'25년도말 조성액 ⓐ	'26년도 기금운용계획			'26년도말 조성액 ⓔ=ⓓ+ⓐ
		수입ⓑ	지출ⓒ	증감 ⓓ=ⓑ-ⓒ	
고향사랑기금	984,552	402,186	166,461	235,725	1,220,277

2) 수입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1,386,738**	**1,386,738**	**0**	
공공예금이자수입	15,831	15,831	0	
기부금수입	386,355	386,355	0	
예치금 회수	984,552	984,552	0	

3) 지출계획

[단위 : 천원]

항 목	변경수입액	당초수입액	증 감	증 감 사 유
합 계	**1,386,738**	**1,386,738**	**0**	
사무관리비	20,000	20,000	0	
예치금	1,220,277	1,256,698	△36,421	
종합사회복지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	30,000	30,000	0	
영유아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	50,000	50,000	0	
찾아가는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 운영	30,040	30,040	0	
거창 유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	36,421	0	36,421	

5. 검토의견

가.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○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「지방기금법」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.

○ 우리군은 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관리·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2020년부터 설치·운용하고 있음.

○ 이에 따라 '통합계정'과 '재정안정화계정'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 예탁·예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.

○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회수 8,646천원,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 700천원을 편성하였음.

○ 지출계획에서

-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7,391,354천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7,400,000천원을 증액하여 증감액은 8,646천원이며
- 통합계정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예치금 7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음.
-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감액은 9,346천원으로 이를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말 조성액은 15,760,255천원임.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2025년 최종잔액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

7,400,000천원을 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본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
※ 계정별 재원 조성과 주요 용도

계 정	재원조성	주요용도	비고
통합계정	타 회계·기금의 예수금, 타 회계·기금에 융자한 원금·이자수입, 통합기금 운용 수익금 등	예수금 원리금 상환, 타 회계·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	
재정안정화계정	세입,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수입 증가에 따른 일반·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	지방채 상환, 대규모 재난·재해 및 심각한 경기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	

나. 고향사랑기금

○ 이 기금의 목적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,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우리군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.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정기부사업인 “제2의 손흥민 발굴 프로젝트 거창 유·청소년 축구단 지원사업” 모금이 2025년 연말로 종료되고 목표액 35,000천원을 달성(36,421천원)하여

사업시행을 위한 세출예산 36,421천원을 편성하려는 것임.

○ 사업내용은 U-12, U-18 기숙사비, 대회참가비, 훈련비 등 지원으로 지정기부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
<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>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고향사랑기금"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**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**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□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(기획예산담당관) [시행 2024. 9.25.]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(이하 “통합 계정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(이하 “재정안정화 계정”이라 한다)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. 다만, 가목의 경우 “합”을 “증가율”로 “평균금액의 110퍼센트”를 “평균 증가율의 10퍼센트”로 본다.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의3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: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

해당하는 금액

다. 「지방교부세법」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세: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
2.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(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포함한다)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해야 한다.

1. 군의 세입 중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
2.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
3. 긴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
4. 채무부담 사업비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6.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

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제4항제5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(2023.11.29.)

□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(약칭: 고향사랑기부금법)

[시행 2025. 1. 1.] [법률 제20314호, 2024. 2. 20., 일부개정]

제7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호별 방문
2.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

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**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**

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20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4. 2. 20.>

□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(전략담당관) [시행 2023. 1. 1.]

제8조(기금의 사용 목적)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고향사랑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관리·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